탄탄한 조세재정
튼튼한 미래한국

조세재정Brief

KIPF ISSUE PAPER

상속증여세제 개편방안

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/ sokwon@kipf.re.kr

01 들어가는 글
02 정책제언

2022.12.29.
No.137

한국조세재정연구원
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

요약

○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을 과거 기준과 유사하게 고자산가로 설정하기를 원한다면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

- 2000년 이후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공제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,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과세대상이 증가하면서 세부담이 증가함
- 물가상승률, 자산분포 변화를 고려하여 고자산가 설정 범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
○ 상속세와 증여세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음

-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세형평성에 부합함
- 그러나 모든 상속인·수증인이 이전받은 재산을 추적하는 데 따르는 과세행정 부담과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가 있음
- 상속세의 과세방식 전환은 공제 제도·세율 등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으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

○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제도의 취지대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이어나가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

- 사후관리 요건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,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또한 일반 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
- 상속세로 인해 기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안,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
  - 이는 일반 상속재산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, 승계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임

01 들어가는 글

○ 최근 인구구조 고령화와 자산가격의 상승으로 상속증여세제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

- 최근 10년간 상속증여세 수입과 국세 대비 세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
  - 상속증여세의 국세 대비 비중은 2010년 1.7%에서 2020년 3.7%로 증가함

○ 본고에서는 상속증여세제도의 향후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함

- 구체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및 공제제도 개편,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

02 정책제언

1. 공제제도 현실화

○ 2000년 이후 상속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공제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, 자산가격이 상승하고 과세대상이 증가하면서 세부담이 증가함

-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2000년에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며, 공제제도는 2014년과 2016년 일부 개편된 바 있음

○ 상속증여세의 과세대상을 과거 기준과 유사하게 고자산가로 설정하기를 원한다면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

- 공제금액을 오랜 기간 유지한다는 것은 고자산가 범위를 확대·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
- 물가상승률, 자산분포 변화를 고려하여 고자산가 범위 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  - 1) 매년 공제금액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어 조정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과 2)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공제금액을 꾸준히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

2.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식 일원화

○ 우리나라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체계는 같으나 상이한 과세방식과 공제제도를 갖고 있는데, 이로 인하여 자산이전에 대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수 있음

- 대부분의 주요국에서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방식, 과세체계, 공제제도가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음

○ 상속세와 증여세를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음

-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과 과세형평성에 부합함
- 그러나 모든 상속인·수증인이 이전받은 재산을 추적하는 데 따르는 과세행정 부담과 위장분할 등 조세회피에 대한 우려가 있음
- 상속세의 과세방식 전환은 공제 제도·세율 등 과세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으로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

3. 가업승계 지원제도 합리화

○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편함에 있어 제도의 취지대로 기업이 경영활동을 이어나가 고용창출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

- 사후관리 요건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되, 기업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
- 또한 일반 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문제와 조세회피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
  -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개인과 기업인 간의 상속재산을 세법상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

○ 우리나라는 연부연납제도를 통해 상속세 일시납부로 인한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있는데, 특히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중 비율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을 더 장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

- 상속세로 인해 기업 활동이 저해되지 않도록 상속재산에 대한 연부연납 기간을 늘리는 방안, 거치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
  - 이는 일반 상속재산과의 세부담 형평성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으면서, 승계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임

토론요약 | 상속세 공청회 전문가 토론

강성훈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교수

- **상속세제와 증여세제를 비교해 보면, 동일한 자산에 대해 증여가 조금 더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상속과 증여의 세부담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 방안을 논의해야 함**
  - 과세 방식을 유산세나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, 유산취득세 방식이 형평성 관점에서 더욱 타당함
  - 많은 국가들이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고 있으며, 과세 인프라도 과거와 달리 잘 구축되어 있어 도입에 큰 어려움이 없을 듯함.
- **과세 방식과 함께 공제제도도 변화해야 하는데, 상속증여세가 형평성 측면에서 중요한 세목이니 만큼 세부담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도 경계해야 함**
  - 또한 실질과세 측면에서 미국과 같은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물가 연동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
  - 특히 배우자 공제의 경우 부부를 경제 공동체로 인정한다면 부부 간 자산 이전을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

김동호 중앙일보 논설위원

- **상속증여세의 원활한 기능을 조세제도가 지원해야 함**
  - 세금이 징벌이 아니라면 합리적 부담을 지워야 하는데 국민소득 증대와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으면 납세자가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음
  - 부담이 너무 클 경우 원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조세회피를 자극하여 경제를 왜곡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
  - 일본의 경우 2014년부터 상속증여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제 규모를 대폭 확대하였는데, 과도한 증여세 부담이 고령화 시대에 소비를 가로막고 부의 원활한 세대 이전을 저해한다고 보아 제도를 개선함
- **가업승계제도 또한 합리화해야 하며, 세금 때문에 승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**

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

- **상속세는 증여세과 같이 상속인은 각자 상속받은 범위 내에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해야 함**
  - 현행 유산세 과세 유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총액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소액을 상속받은 상속인도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됨
    - 또한 연대납부의무가 있어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
  - 정부는 그간 납세 환경의 미비로 징세 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유산취득세 방식의 도입을 주저하였으나 부동산실명제, 납세의무자 자료제출 의무 강화, 국세통합시스템에서의 관리·분석 등 납세환경 요인이 변화하였음

◎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통합해야 함

- 우리나라가 둘을 구분하는 이유는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임
-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재산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 단계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 이월 과세하도록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도록 함
- 영농상속공제를 가업상속공제와 통합하더라도 토지의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영농업종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이 지원해야 함

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◎ 상증세는 '공평성'에 방점을 둔 세목으로 경제양극화를 시장이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부정적 상황을 바로잡는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함

- 이미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이 예고되었고, 에너지 세제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날 여지가 있는 가운데 나라의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협력과 희생을 요구할 상황이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음
- 이러한 협력과 희생은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부담을 불균등하게 지우는 경향이 있으므로, 이러한 상황에서 상증세 부담을 전체적으로 낮추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함
- 발표문에서 '세대 간 부의 원활한 이전'이라는 표현이 있는데, 그러한 부가 원활하게 이전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어려움

장박원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

◎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개편해야 함

- 상속세 과세표준이 2000년 이후 바뀌지 않았는데, 자산 가격은 많이 올라 수도권 아파트의 12.5%가 상속세 과세 대상임
  - 즉 상증세는 부자 과세라고 알고 있는데, 이것이 보편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임
- 과도한 상속세율의 문제도 있는데 기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식에 대해서는 20%까지 할증되어 기업인 상속세율은 60%까지 올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 됨

◎ 가업상속공제제도 또한 현실화가 필요한데, 그중 업종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

- 업종과 관련하여 더욱더 탄력적이면서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상증세율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함
  - 업종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렸을 때 조세회피와 같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으나, 이 또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봄

최승문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

- 가업상속공제의 정당성은 인정하지만 승계되는 기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, 이에 대한 엄밀한 연구가 필요함
  - 가업상속공제의 지나친 확대보다는 자녀가 승계해야만 기업 고유의 기술 또는 경영노하우가 잘 전수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함
  - 또한 지나친 상속 공제보다는 장기간에 걸친 분납이나 과세이연을 허용해 주고 사후 유지 조건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함
- 전반적인 세부담과 관련해 흔히 언론을 통해 상속세를 비판하시는 분들이 사망하면 국가가 50%를 가져간다고들 하는데, 이는 최고세율과 실효세율을 혼동한 것임
  - 실례로 상속재산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효세율이 0.8%로 거의 없으며, 50억~100억원 사이면 18.4%, 500억을 초과하는 경우 42% 정도로 산출됨
  - 이러한 실효세율이 지나친가에 대해서는 국민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함

여론조사 | 재산세제 세제개편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

※ 조세제도를 현실화하고 과다한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논의되는 가운데, 본원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현 세율 체계와 공제제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였음

〈조사 개요〉

조사대상	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
유효표본	1,000명
조사방법	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모바일 web조사(Self-Survey)
표본추출방법	지역·성별·연령을 고려한 층화추출법
표본오차	95% 신뢰수준에서 ±3.10%
조사기간	2022일 7월 6일~7월 13일
조사기관	㈜코리아데이타네트워크

상속·증여세 부담 정도

-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요국의 상속·증여세 최고세율은 다음과 같음
  - 일본(55%), 한국(50%), 프랑스(45%), 미국(40%), 영국(40%), 독일(30%), 벨기에(30%), 네덜란드(20%) (OECD 38개 회원국 평균 약 27%)
  - 이러한 배경하에 상속·증여세 부담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75.1%가 상속·증여세가 '높다'(매우 높은 편+높은 편)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Q. 우리나라의 상속·증여세 부담이 어떠하다고 보십니까?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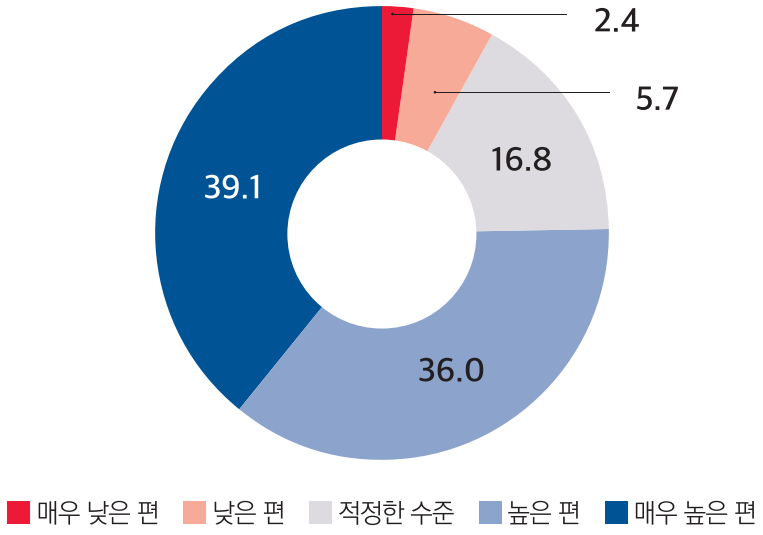

상속·증여세 조정 방향

- 상속·증여세의 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%(37.9%+34.2%)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, '현행 유지' 16.6%,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11.3%로 나타남

Q. 우리나라의 상속·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 (단위: %, 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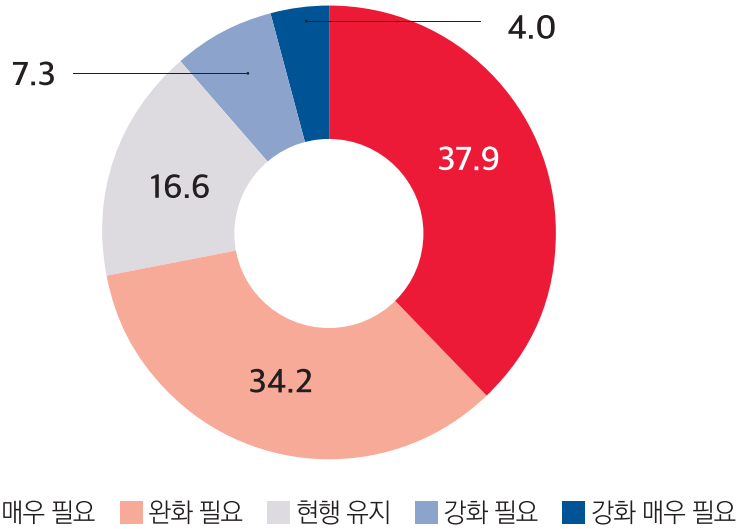

상속세 인적공제 금액 상향 조정 필요성

- 우리나라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세금 감면의 취지로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
  - 상속세 인적공제로는 일괄 공제(5억원)와 배우자공제(5억~30억원) 등이 있으며, 1997년 공제금액 개편 이후 현재까지 유사한 금액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음
- 이러한 인적공제 금액의 조정에 대해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3.9%, (일부 공제 항목에 대한) 부분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9.5%, 상향 조정이 필요 없다는 응답이 16.6%로 나타남

Q. 상속세 인적공제 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(단위: %, 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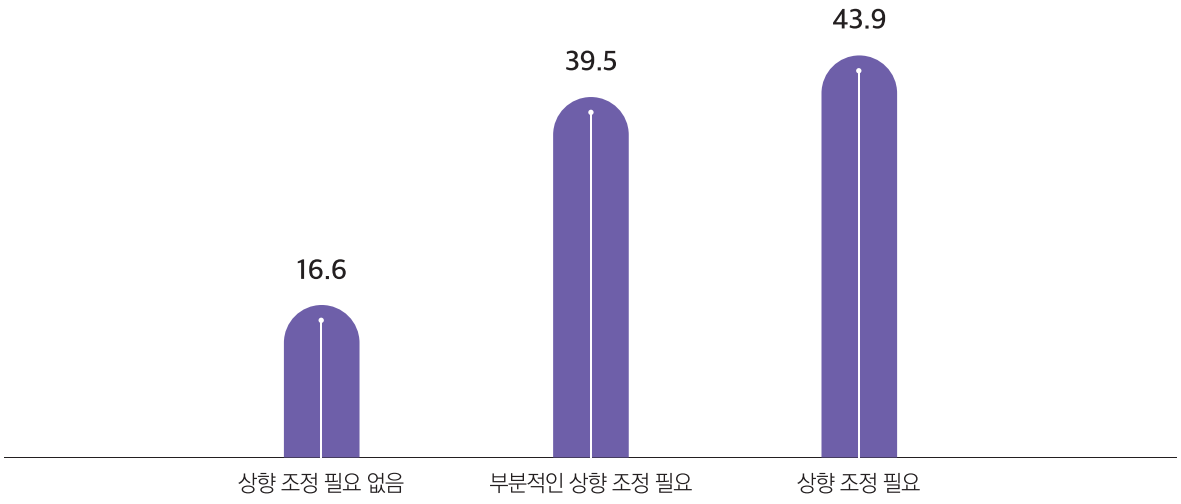

상속세 일괄공제 적정 금액

- 상속세 일괄공제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는 37.1%가 '6억~10억원'을 공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'현행 유지' 28.4%, '11억~15억원' 일괄 공제가 23.7%로 나타남

Q.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. 상속세 일괄공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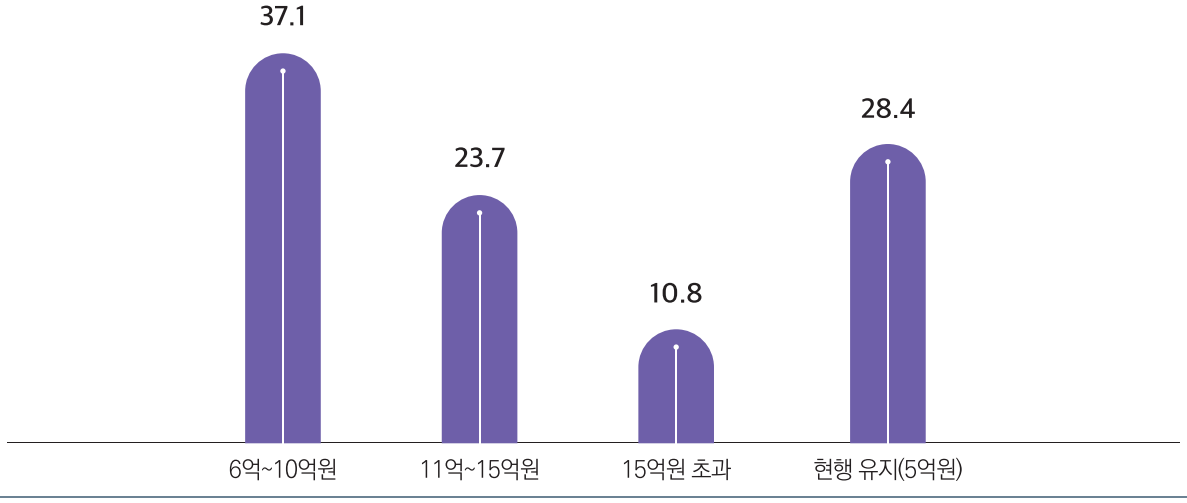

상속세 배우자공제 적정 금액

-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세 일괄공제 외에 상속세 배우자공제가 가능함
- 부부가 혼인 중 공동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배우자공제 개편 수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봄
  - 이에 33.7%가 '현행 유지(5억~30억원)'가 적정하다고 보았으며, 10억~50억원 공제가 28.0%, '배우자 간 전액공제'가 26.0%로 나타남

Q. 현행 배우자공제는 5억~30억원입니다. 상속세 배우자공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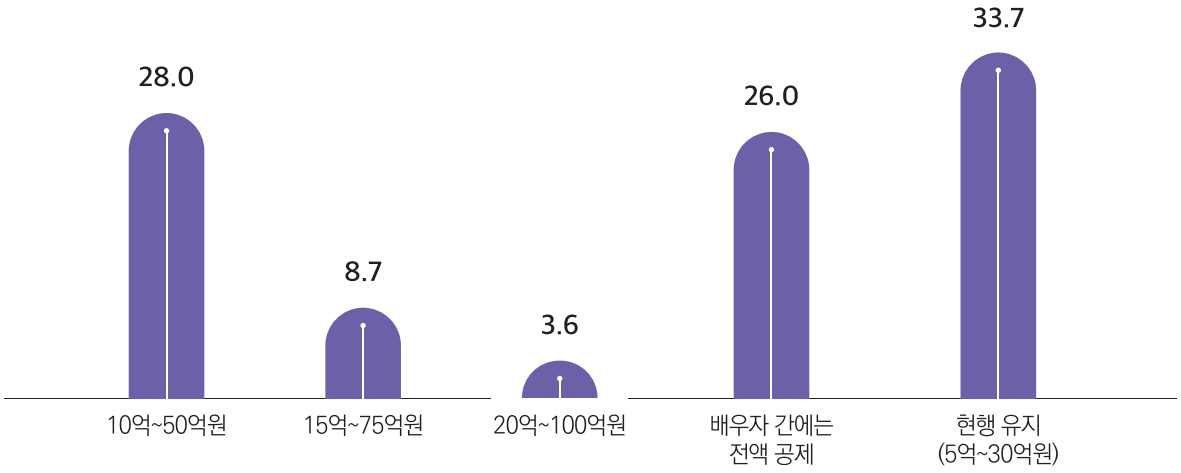

증여세 공제금액 상향 조정 필요성

- 증여세의 경우 증여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경우, 일정액을 공제하는 증여재산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
  - 밀접한 인적 관계란 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·조부모 등), 직계비속(자식·손자 등), 6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
- 증여세 공제금액을 조정 방안에 대해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0.2%로 절반 정도였고, (일부 공제 항목에 대한) 부분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 응답이 32.5%였음
  - 반면 상향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7.3%로 나타남

Q. 증여세 공제금액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(단위: 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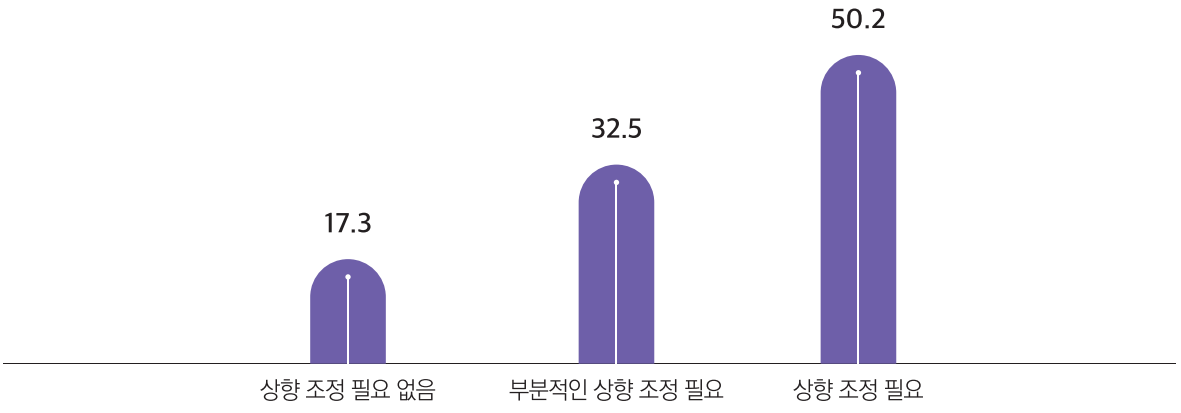

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정 금액

- 현행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으로, 10억원 증여 시 6억원 공제 후 남은 4억원에 대해서만 과제하고 있음
  -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개편할 시 적정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'배우자 간에는 전액 공제'가 28.5%로 가장 높았고, '7억~10억원' 공제가 24.2%, '현행 유지'가 23.6% 순으로 나타남

Q.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조정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(단위: %, 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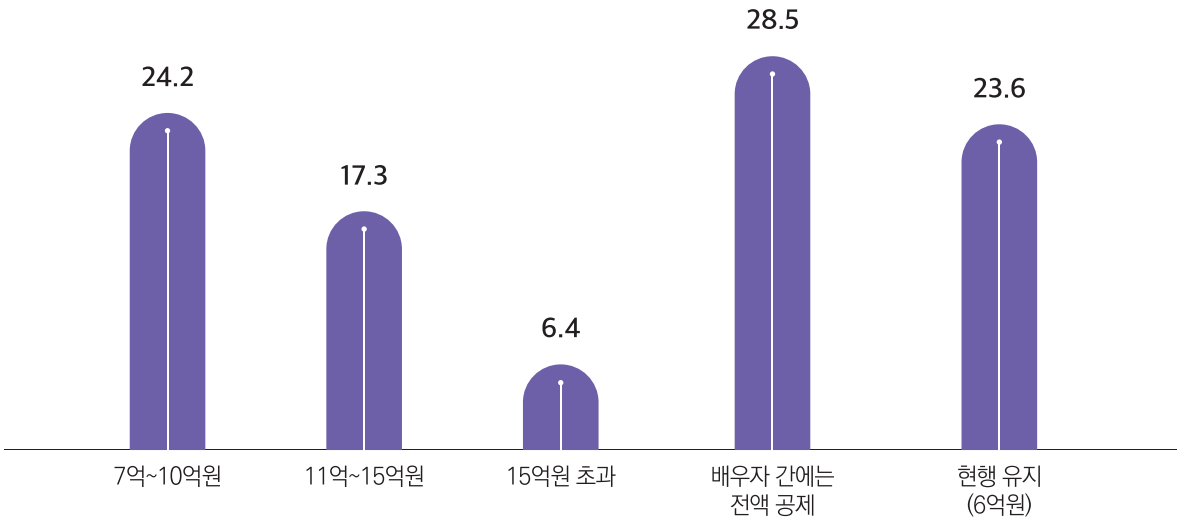

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적정 금액

- 현행 직계존비속(부모·조부모, 자식·손자 등)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(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)으로, 증여재산에서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과세함
  - 직계존비속 증여재산공제 개편 시 적정 금액을 묻는 질문에 '2억원'이 30.7%로 가장 높았고, 다음으로 '3억~5억원'이 25.8%, '현행 유지(5천만원)'가 24.8%로 나타남

Q.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를 조정해야 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(단위: %, 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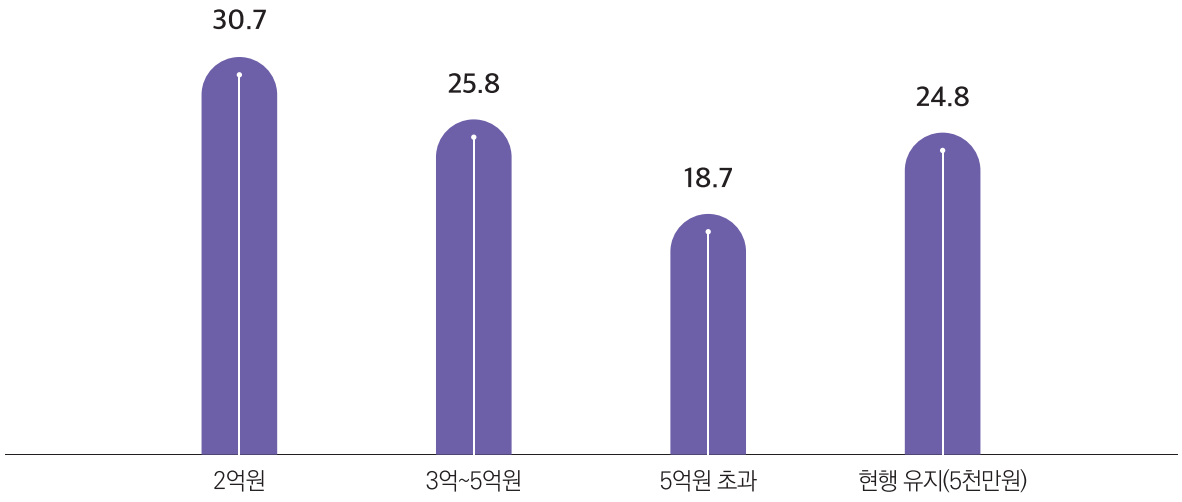

가업상속공제 의무요건 조정 필요성

- 우리나라는 중소·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·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하고, 상속인이 사후 관리기간 동안 업종 고용자산 지분유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하고 있음
  - 가업상속공제 의무요건의 개편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,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2.9%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, 현행 유지 32.5%,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24.6% 순으로 나타남

Q. 가업상속공제 적용 후, 사후 관리기간(7년) 동안, 가업종사, 지분유지, 가업유지, 고용확대의 의무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. 이들 요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(단위: %, 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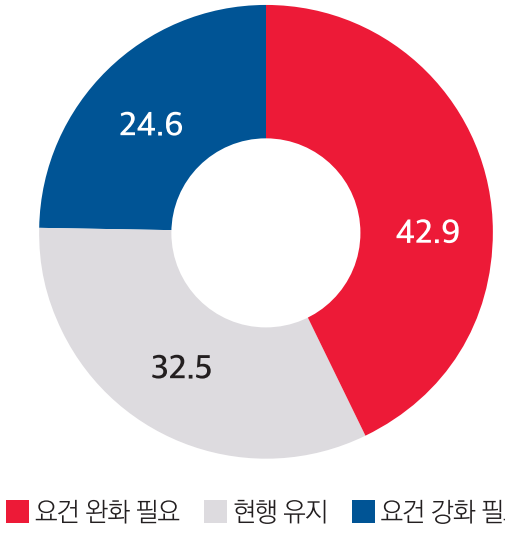

상속세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필요성

- 우리나라는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,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있음
  -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(사망자)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 후 상속인에게 배분함
  -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별로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 각각 세금 계산(상속인별 세부담 능력 고려)하는 것으로, 상속세를 부과하는 OECD 24개 회원국 중 20개국이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음
-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,
  - 전환은 필요하나 과세체계 전환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50.3%로 가장 많았으며, 전환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0.8%로 나타남

Q. 상속세에 대해서 기존 '유산세' 방식에서 '유산취득세'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?

(단위: %, 복수응답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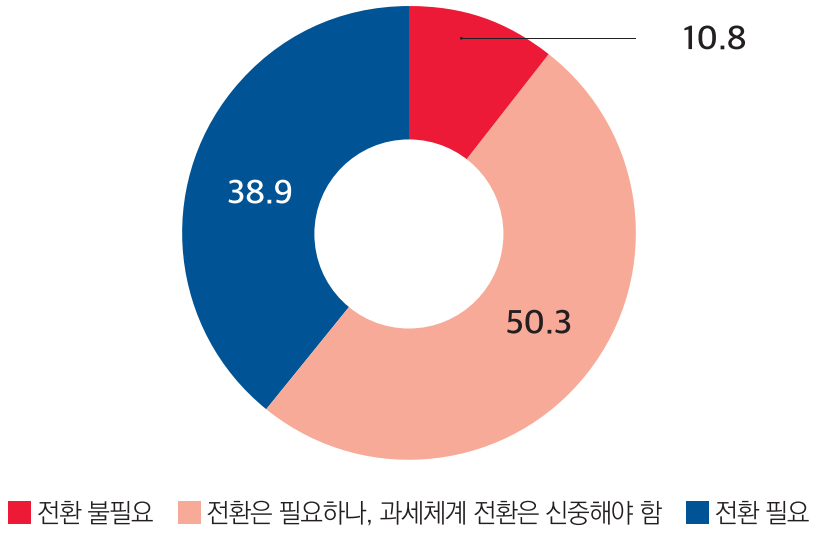

한국조세재정연구원
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
TEL:044-414-2114 | www.kipf.re.kr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